

## 열공급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p>제46조(요금의 감면) ①온수를 열매체로 공급받는 사용자중 다음 각호의 1의 사용자의 경우에는 요금을 감면할 수 있습니다.</p> <p>1. ~ 8 (생략)</p> <p>9. 제8호에 따른 주택 이외의 주택용 사용자 단지에 거주하는 개별세대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아래표에 명시된 감면대상유형별 해당금액 감면</p> <p>가. ~다 (생략)</p> <p>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3급 장애인</p> <p>마. ~사 (생략)</p> <p>아. 다음 법령에 따라 지원 받는 차상위계층 또는 차상위계층에 준하는 자로서 사업자가 인정하는 자</p> <p>(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 5항</p> <p>(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라목</p> <p>(3) 장애인복지법 제49조, 제50조</p> <p>(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p> <p>(5) (신설)</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margin-top: 10px;">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감면대상유형</th> <th style="text-align: center;">월 감면액(부가세포함)</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마목 (생계급여, 의료급여)</td> <td style="text-align: center;">10,000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가나다라마(주거급여, 교육급여)아목</td> <td style="text-align: center;">5,000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바·사목</td> <td style="text-align: center;">4,000원</td> </tr> </tbody> </table>	감면대상유형	월 감면액(부가세포함)	마목 (생계급여, 의료급여)	10,000원	가나다라마(주거급여, 교육급여)아목	5,000원	바·사목	4,000원	<p>제46조(요금의 감면) ①온수를 열매체로 공급받는 사용자중 다음 각호의 1의 사용자의 경우에는 요금을 감면할 수 있습니다.</p> <p>1. ~ 8 (현행과 같음)</p> <p>9. <b>제6호 또는 제8호 이외의 공급지역에</b> 거주하는 개별세대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아래표에 명시된 감면대상유형별 해당금액 감면</p> <p>가. ~다 (현행과 같음)</p> <p>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b>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b></p> <p>마. ~사 (현행과 같음)</p> <p>아. 다음 법령에 따라 지원 받는 차상위계층 또는 차상위계층에 준하는 자로서 사업자가 인정하는 자</p> <p>(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 <b>제5항</b></p> <p>(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라목</p> <p>(3) 장애인복지법 제49조, 제50조</p> <p>(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p> <p><b>(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조(舊 차상위 우선돌봄)</b></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margin-top: 10px;">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감면대상유형</th> <th style="text-align: center;">월 감면액(부가세포함)</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마목 (생계급여, 의료급여)</td> <td style="text-align: center;">10,000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가나다라마(주거급여, 교육급여)아목</td> <td style="text-align: center;">5,000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바·사목</td> <td style="text-align: center;">4,000원</td> </tr> </tbody> </table>	감면대상유형	월 감면액(부가세포함)	마목 (생계급여, 의료급여)	10,000원	가나다라마(주거급여, 교육급여)아목	5,000원	바·사목	4,000원	<p>○ 지원 대상 자격 확대 반영</p> <p>○ 타법 개정 반영</p> <p>○ 지원 대상 자격 추가 반영</p>
감면대상유형	월 감면액(부가세포함)																	
마목 (생계급여, 의료급여)	10,000원																	
가나다라마(주거급여, 교육급여)아목	5,000원																	
바·사목	4,000원																	
감면대상유형	월 감면액(부가세포함)																	
마목 (생계급여, 의료급여)	10,000원																	
가나다라마(주거급여, 교육급여)아목	5,000원																	
바·사목	4,000원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p>10. 주택법시행령 제4조 4호의 규정에 의한 오피스텔의 경우 : 주거용으로 확인된 호실에 대해 해당 오피스텔 평균사용량 기준으로 계산한 난방용 사용요금의 100분의 20 감면(냉방용 사용요금 감면제외) ②~⑥ (생략)</p> <p>⑦ 냉수를 열매체로 공급받는 사용자 중 월간이용율이 60% 이상의 시설이 있는 고이용율 냉수사용자에 대하여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사용요금을 감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냉수계약용량을 건물 사용용도 구획별로 구분하여 계약체결한 고이용율 냉수사용자는 각각의 냉수계약용량을 기준으로 월간이용율을 계산하여 적용합니다.</p> <p>1. 감면금액 = 총사용요금 × (월간이용률 ÷ 2) 2. 월간이용률 = (월간실제사용량) / (냉수계약용량 × 월간시간), 단, 월간이용율은 100%까지 적용합니다.</p>	<p>10. 주택법시행령 제4조 4호의 규정에 의한 오피스텔의 경우 : 주거용으로 확인된 호실에 대해 해당 오피스텔 평균사용량 기준으로 계산한 난방용 사용요금의 100분의 20 감면(온수 냉방용 사용요금 감면제외) ②~⑥ (현행과 같음)</p> <p>⑦ 냉수를 열매체로 공급받는 사용자 중 다음 각호의 1의 사용자의 경우에는 요금을 감면할 수 있습니다.</p> <p>1. 월간이용율이 60%이상의 시설이 있는 고이용율 냉수사용자 2. 주택법시행령 제4조 제4호에 의한 오피스텔 중 주거용으로 확인된 호실 및 제5조 제21호에 따른 공동주택</p> <p>⑧ 제7항 제1호에 의한 요금감면을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계산합니다.</p> <p>1. 감면금액 : 총 사용요금 × (월간이용률 ÷ 2) 2. 월간이용률 : (월간실제사용량) / (냉수계약용량 × 월간시간), 단, 월간이용율은 100%를 상한으로 합니다. 3. 냉수계약용량을 건물 사용용도 구획별로 구분하여 계약체결한 경우 각각의 냉수계약용량을 기준으로 월간이용율을 계산하여 적용합니다.</p> <p>⑨ 제7항 제2호에 의한 요금감면을 할 경우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계산합니다.</p> <p>1. 오피스텔 기본요금 감면금액 : {(오피스텔 계약용량 × 요금표(별표3)의 냉수기본요금단가) - (오피스텔 계약용량 × 요금표(별표3)의 냉수 기본요금 중 3,000Mcal/h 초과 구간 단가)} × 주거용 비율로 합니다.</p>	<p>○ 냉수요금 감면 관련 조항 정비 - 냉수요금 감면 개정에 따른 냉방용 사용요금 감면제외 대상 명확화</p> <p>○ 냉수요금 감면 관련 조항 정비 - 감면대상 : 오피스텔 주거용 호실, 공동주택 사용자 신설</p> <p>○ 냉수요금 감면 관련 조항 정비 - (당초) 7항 → (변경) 8항</p> <p>○ 오피스텔 주거용 호실, 공동주택 대상 냉방요금(기본요금, 사용요금)감면 및 산출기준 규정 반영</p>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p>2. 오피스텔 계약용량은 열교환기가 구분 설치되어 있을 경우에는 열교환기 용량별로 적용하며, 열교환기가 구분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 나목에서 정한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 등을 제외한 사무 및 주거공간으로 이용되는 시설의 냉수계약용량을 적용하여 산정합니다.</p> <p>3. 오피스텔 사용요금 감면금액 : 오피스텔 총 냉수 사용량 x 요금표(별표3)의 냉수사용요금단가 x 주거용비율 x 20%</p> <p>4. 오피스텔 총 냉수사용량은 계량기가 구분 설치되어 있을 경우에는 구분된 검침량을 적용하며, 계량기가 구분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아래의 산식으로 냉수계약용량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합니다.</p> <p>오피스텔 총 냉수사용량 = (오피스텔 냉수계약용량 ÷ 전체 냉수계약용량) x 총사용량</p> <p>5. 공동주택 기본요금 감면금액 : (계약용량 × 요금표(별표3)의 냉수기본요금단가) - (계약용량 x 요금표(별표3)의 냉수 기본요금 중 3,000Mcal/h 초과 구간 단가)</p> <p>6. 공동주택 사용요금 감면금액 : 총 냉수 사용량 x 요금표(별표3)의 냉수사용요금단가 x 20% 로 합니다.</p> <p>⑩ 제7항의 규정에 따른 요금감면이 중복된 경우에는 총 감면금액이 큰 것 하나만을 적용합니다.</p>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p>⑪ 제8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용도별로 기본요금을 분리 부과하거나 여러 개의 용도로 사용중인 건축물에서 제46조 제7항 제2호의 주거용으로 확인된 호실의 오피스텔 사용자에게 기본요금을 감면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산합니다.</p> <p>1. 용도별 냉수기본요금 : 전체 계약용량으로 계산된 기본요금 x 용도별 계약용량 ÷ 전체계약용량</p> <p>2. 오피스텔 기본요금 감면금액 : 오피스텔 기본요금 - {(오피스텔 기본요금 x (1 - 주거용 비율) + (오피스텔 계약용량 x 요금표(별표3)의 3,000Mcal/h 초과 구간 단가 x 주거용 비율)}</p> <p>3. 제2호의 오피스텔 기본요금은 제1호의 용도별 냉수기본요금 계산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합니다.</p> <p>4. 제9항 제1, 3호와 본항의 주거용 비율에 대한 산정은 제46조 제5항의 제4호 내지 제6호를 준용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이 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다만, 제46조 제1항 제9호 아목 (5)의 개정사항은 2019년 지급분부터 적용합니다.</p>	<p>○ 사용용도별 기본요금 분리부과 적용 및 제46조7항2호의 주거용으로 확인된 호실의 오피스텔 사용자에게 기본요금감면 적용시 감면금액 산출기준 신설</p>

현 행

개 정

개 정 사 유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지역난방 에너지복지 지원 신청서				
		(*)접수번호	(*)열사용자번호	
지원 대상자명	지원 대상자 주민번호			
	지원 대상자 휴대폰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주민번호			
세대주명	<input type="checkbox"/> 지원대상과 동일 (체크시 세대주사항 <b>미작성</b> )			
주 소				
지원 대상 종류 (해당사항 * 표시)	<input type="checkbox"/> 다자녀(3자녀이상) 가구 <input type="checkbox"/> 독립유공자 <input type="checkbox"/> 기초생활수급자 <input type="checkbox"/> 생계급여 <input type="checkbox"/> 의료급여 <input type="checkbox"/> 주거급여 <input type="checkbox"/> 교육급여		<input type="checkbox"/> 장애인 1-3급 (장애 ___급) <input type="checkbox"/> 국가유공자 1-3급 (상이 ___급) <input type="checkbox"/> 5.18유공자 1-3급 (상이 ___급) * 장애인, 국가(5.18)유공자는 장애·상이등급도 <b>적어 넣습니다.</b>	
	<input type="checkbox"/> 차상위계층 ( <input type="checkbox"/> 자활사업참여, <input type="checkbox"/> 장애수당자, <input type="checkbox"/> 한부모가족지원, <input type="checkbox"/> 본인부담 경감 )			
입금 계좌	*입금은행	계좌번호 ("-" 없이 입력)	예금주명	예금주와의관계
* 입금계좌는 지원금액 지급(환급) 시 필요합니다. 지원대상자 또는 세대주 명의의 계좌를 정확히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난방 에너지복지 지원 신청서				
		(*)접수번호	(*)열사용자번호	
지원 대상자명	지원 대상자 주민번호			
	지원 대상자 휴대폰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주민번호			
세대주명	<input type="checkbox"/> 지원대상과 동일 (체크시 세대주사항 <b>미작성</b> )			
주 소				
지원 대상 종류 (해당사항 * 표시)	<input type="checkbox"/> 다자녀(3자녀이상) 가구 <input type="checkbox"/> 독립유공자 <input type="checkbox"/> 기초생활수급자 <input type="checkbox"/> 생계급여 <input type="checkbox"/> 의료급여 <input type="checkbox"/> 주거급여 <input type="checkbox"/> 교육급여		<input type="checkbox"/>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input type="checkbox"/> 국가유공자 1-3급 (상이 ___급) <input type="checkbox"/> 5.18유공자 1-3급 (상이 ___급) * 국가(5.18)유공자는 장애·상이등급도 <b>적어 넣습니다.</b>	
	<input type="checkbox"/> 차상위계층 ( <input type="checkbox"/> 자활사업참여, <input type="checkbox"/> 장애수당자, <input type="checkbox"/> 한부모가족지원, <input type="checkbox"/> 본인부담 경감, <input type="checkbox"/> 차상위계층확인(舊 차상위 우선돌봄) )			
입금 계좌	*입금은행	계좌번호 ("-" 없이 입력)	예금주명	예금주와의관계
* 입금계좌는 지원금액 지급(환급) 시 필요합니다. <b>지원대상자 또는 세대주 명의의 계좌를 정확히 적어 주시기</b> 바랍니다.				

**동의 사항**

■ 변동사실 통보의무 이행 및 부당요금 추가납부에 대한 동의  
 지역난방 에너지 복지요금 지원대상자로서 위와 같이 주택용 지역난방 에너지복지지원을 신청합니다. 또한, 이사·사망·가구수변동·수급제외·입금계좌정보 등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변동 내용을 한국지역난방공사에 자진하여 신고하겠으며, 신고누락으로 부당하게 지원받은 경우 결격사유가 발생한 시점부터 지원금을 소급하여 즉시 반납하는데 동의합니다.

**동의 사항**

■ 변동사실 통보의무 이행 및 부당요금 추가납부에 대한 동의  
 지역난방 에너지 복지요금 지원대상자로서 위와 같이 주택용 지역난방 에너지복지지원을 신청합니다. 또한, 이사·사망·가구수변동·수급제외·입금계좌정보 등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변동 내용을 한국지역난방공사에 자진하여 신고하겠으며, 신고누락으로 부당하게 지원받은 경우 결격사유가 발생한 시점부터 지원금을 소급하여 즉시 반납하는데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내 사항**

개인정보·고유식별번호 제3자 제공 등에 동의하실 경우 전자정부로 열람가능한 서류는 제출을 생각합니다.  
 (1.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2.고유식별정보 수집동의 3.민감정보 수집 동의 4.개인정보의 위탁 및 제3자 제공 동의 5.법정대리인 동의 6.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사전 동의)

**안내 사항**

개인정보·고유식별번호 제3자 제공 등에 동의하실 경우 전자정부로 열람가능한 서류는 제출을 생각합니다.  
 (1.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2.고유식별정보 수집동의 3.민감정보 수집 동의 4.개인정보의 위탁 및 제3자 제공 동의 5.법정대리인 동의 6.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사전 동의)

구 분	구 비 서 류	비 고
기본서류	- 에너지복지 지원 신청서(인터넷 신청 시 제출 생략)	-
공통서류	- 주민등록등본	-
증빙서류	- 다자녀 가구 : 없음 -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장애인 1,2,3급 : 복지카드 또는 장애증명서 - 국가유공자(5.18민중유공자) 1,2,3급 : 국가유공자증 -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증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자활사업참여, 장애수당자, 한부모가족지원, 본인부담 경감)	제3자 제공에 대한 사전동의(신청서 동의란 확인시) <b>제출생략 가능</b> * 단, 중복자격 및 사망에 따른 자격확인시 증빙서류 제외
<input type="checkbox"/> 매년 8~10월경 해당 연도의 지원적용기간(전년 3월1일~금년 2월28일, 12개월)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개별계좌로 지원해드립니다.		
* 개인정보·고유식별번호제3자 제공 등 정보수집이용 동의서 양식을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구 비 서 류	비 고
기본서류	- 에너지복지 지원 신청서(인터넷 신청 시 제출 생략)	-
공통서류	- 주민등록등본	-
증빙서류	- 다자녀 가구 : 없음 -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복지카드 또는 장애증명서 - 국가유공자(5.18민중유공자) 1,2,3급 : 국가유공자증 -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증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확인서류(자활사업참여, 장애수당자, 한부모가족지원, 본인부담 경감, 차상위계층확인(舊 차상위 우선돌봄))	제3자 제공에 대한 사전동의(신청서 동의란 확인시) <b>제출생략 가능</b> * 단, 중복자격 및 사망에 따른 자격확인시 증빙서류 제외
<input type="checkbox"/> 매년 8~10월경 해당 연도의 지원적용기간(전년 3월1일~금년 2월28일, 12개월)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개별계좌로 지원해드립니다.		
* 개인정보·고유식별번호제3자 제공 등 정보수집이용 동의서 양식을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및 동의서 상 필수 작성사항(음영부분) 미기재시 접수가 불가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지원신청 서식 개선



## 현행

**개인정보·고유식별번호 제3차제공등 정보수집·이용동의서**

한국지역난방은 지역난방 에너지복지요금 지원 신청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의하는 주시기를 바랍니다.

■ **수집 및 이용목적**

- 지역난방 주택용사용자에 대한 요금감면(에너지복지지원금) 지원 신청·해지
- 지역난방 에너지복지 지원에 대한 자격대상 확인 및 지원을 위한 의사소통 경로 확보
- 그 밖에 개인정보처리방침(http://www.kdhc.co.kr)에 고지된 **수탁기판**에 서비스 제공 등 지원이행에 필요한 업무의 위탁

■ **보유·이용 근거**

-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7조(공급규정)
-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제31조의2(고유식별번호 처리)

■ **보유·이용 기간**

- 수집한 개인정보는 권리의무관계의 확인 등을 위하여 특정 범위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술 등 변동으로 인한 지역난방 사용 계약 해지 또는 지원자격 상실 후 최장 2년간 보관합니다

■ **수집항목**

개인정보	[필수] <b>성명, 연락처</b> , 주소, 지원대상종류, 입금은행, 계좌번호, 예금주명, 예금주와의 관계
고유 식별번호	주민등록번호
민감정보(건강정보)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만14세미만 아동의 법정대리(보호자)정보	법정대리인의 성명, 연락처 등

■ **개인정보의 위탁 및 제3차 제공**

구분	개인정보 이용항목	제공받는 자	보유기간
업무의 위탁	성명, <b>주민등록번호</b> , 주소, 연락처, 개인계좌, 간면대상여부	고객콜센터관리운영 위탁 용역사	이용 후
제3차 제공	성명, <b>주민등록번호</b> , 간면대상자격 취득상실여부	<b>행정안전부</b> , 보건복지부, 보훈처	즉시 파괴

※ 그 밖에 개인정보 취급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http://www.kdhc.co.kr)에 공개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동의 거부권**

고객님께서 개인정보 수집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 거부시 지역난방 에너지 복지 지원 적용이 제한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고유식별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민감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의 위탁 및 제3차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동의 시 □란에 "√"표시)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개정

**개인정보·고유식별번호 제3차제공등 정보수집·이용동의서**

■ **동의 거부권** (동의 시 □란에 "√"표시)

고객님께서 개인정보 수집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 거부시 지역난방 에너지 복지 지원 적용이 제한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고유식별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민감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의 위탁 및 제3차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동의 시 □란에 "√"표시)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대한 사전동의**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등(초)본	인(서명)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증명	
유공자확인	

**보호자(부모 및 법정대리인) 동의서**

신청인 정보 (14세 미만 미성년자)	성명	인(서명)
	생년월일	
법정대리인 정보 (보호자 또는 부모)	성명	
	생년월일	
	신청인과의 관계 연락처(휴대폰)	

■ 본 동의서는 미성년자(만14세 미만)가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한국지역난방공사에 제공하고 에너지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에 대한 귀하(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를 확인 하는 내용의 동의서입니다.

■ 회사는 귀하(법정대리인)의 자녀(만14세 미만)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등에 대한 동의 확인을 위해 제공한 개인정보를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명시한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용목적에 다한 경우에는 재성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즉시 파기합니다.

■ 귀하(법정대리인)께서는 미성년자(만14세미만)의 개인정보(수집, 이용, 제공 등)에 대한 동의 철회, 개인정보의 열람, 오류 정정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한국지역난방공사 대표전화(1688-2488)를 통해 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상기 보호자 본인은 신청인의 법정대리인으로서 회사가 위 신청인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하는 데에 동의하며 피보호자의 서비스 이용을 허락합니다.

2. 상기 보호자 본인은 신청인의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한국지역난방공사 개인정보취급방침 및 서비스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

법정대리인(보호자 또는 부모) 20 년 월 일 인(서명)

**보호자(부모 및 법정대리인) 동의서**

신청인 정보 (14세 미만 미성년자)	성명	인(서명)
	생년월일	
법정대리인 정보 (보호자 또는 부모)	성명	
	생년월일	
	신청인과의 관계 연락처(휴대폰)	

■ 본 동의서는 미성년자(만14세 미만)가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한국지역난방공사에 제공하고 에너지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에 대한 귀하(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를 확인 하는 내용의 동의서입니다.

■ 회사는 귀하(법정대리인)의 자녀(만14세 미만)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등에 대한 동의 확인을 위해 제공한 개인정보를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명시한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용목적에 다한 경우에는 재성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즉시 파기합니다.

■ 귀하(법정대리인)께서는 미성년자(만14세미만)의 개인정보(수집, 이용, 제공 등)에 대한 동의 철회, 개인정보의 열람, 오류 정정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한국지역난방공사 대표전화(1688-2488)를 통해 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상기 보호자 본인은 신청인의 법정대리인으로서 회사가 위 신청인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하는 데에 동의하며 피보호자의 서비스 이용을 허락합니다.

2. 상기 보호자 본인은 신청인의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한국지역난방공사 개인정보취급방침 및 서비스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법정대리인(보호자 또는 부모) 인(서명)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대한 사전동의**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등(초)본	인(서명)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증명	
국가유공자	

현행	개정	개정사유																								
<p>(별지 제9호서식)</p> <p>(※) 접수번호 및 열사용자코드는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적어 넣습니다.</p> <p>① 신청인 : 신청인은 지원대상자 본인 또는 지원대상자가 거주하는 세대의 세대주여야 하며, 본인인증을 위한 휴대폰번호를 반드시 적어 넣습니다.</p> <p>② 지원대상 고객정보 - 지원대상자 : 복지지원 대상자, 다자녀가구의 세대주를 적어 넣습니다.</p> <p><b>「복지지원 대상」</b></p> <table border="1" data-bbox="120 376 936 611"> <tr> <td>장애인</td> <td>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3급 장애인</td> </tr> <tr> <td>국가유공자</td> <td>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1~3급 상이자</td> </tr> <tr> <td>5.18민주유공자</td> <td>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1~3급 상이자</td> </tr> <tr> <td>독립유공자</td> <td>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또는 권리를 이전받은 유족 1명</td> </tr> <tr> <td>기초생활수급자</td> <td>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정한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해당자)</td> </tr> <tr> <td>차상위계층</td> <td>- 자활사업참여자, 차상위장애수당자, 한부모가족지원 가정으로서 주민센터 증명서류 발급 대상자 - 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서류 발급 대상자</td> </tr> </table> <p><b>「다자녀가구」</b>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가 3명 이상 또는 “손(孫)”이 3명 이상으로 표시된 주거용 주택의 세대주 *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와 동일한 주소지에 등재되어있어야 합니다. ** 3자녀 이상 가구는 세대주명과 지원대상자명을 동일하게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세대주 : 지원대상자가 거주하는 가구의 세대주를 적어야하며, 세대주와의 관계는 지원대상자와 세대주와의 관계를 적어 넣습니다. 주소는 주민등록표상 거주지입니다.</p> <p>- 지원대상 종류 : 지원대상자가 해당하는 사항에 “√”표시 하시되, 장애인·국가(5.18)유공자는 상이등급을 적어야하며, 상이 3등급 이상만 신청 가능합니다.</p> <p>- 지원기간은 공급지역내 거주 및 자격 보유기간으로 산정, 지원 자격증명 발급일이 전입일 보다 늦은 경우 증명서발급일을 적어야하며, 다자녀가구의 경우는 셋째자녀 출생 등록일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최대 12개월치 지급)</p> <p>③ <b>입급계좌</b> : 지원금액 지급 시 필요합니다. 지원대상자 또는 세대주 명의의 계좌를 적어 넣습니다. 다만 증권계좌 및 일부계좌는 불가하오니 조회 후 지원가능 계좌를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 계좌정보 오류(해지계좌, 계좌번호 오기, 예금주 상이 등)로 인한 경우 지역난방 에너지복지지원금 지급되지 않을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b>개인정보·교육식별번호·제3자 제공등·민감정보처리·법정대리인 정보수집 및 이용동의</b> : 지역난방 에너지복지 지원금 지원대상 자격정보 확인에 필요한 정보수집 및 이용에 활용합니다. * 민감정보 수집 및 처리 동의는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장애인에만 해당합니다 * 만14세미만의 지역난방 에너지복지 지원대상 아동의 개인정보는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 해당 아동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 아동의 에너지복지 서비스 가입을 위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가입시 고지한 범위 또는 서비스 이용약관에 명시한 범위를 넘어 아동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 아동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하는 경우 *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위하여 수집한 법정대리인의 개인정보를 해당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를 확인하는 목적 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p>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3급 장애인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1~3급 상이자	5.18민주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1~3급 상이자	독립유공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또는 권리를 이전받은 유족 1명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정한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해당자)	차상위계층	- 자활사업참여자, 차상위장애수당자, 한부모가족지원 가정으로서 주민센터 증명서류 발급 대상자 - 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서류 발급 대상자	<p>(별지 제9호서식)</p> <p>(※) 접수번호 및 열사용자코드는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적어 넣습니다.</p> <p>① 신청인 : 신청인은 지원대상자 본인 또는 지원대상자가 거주하는 세대의 세대주여야 하며, 본인인증을 위한 휴대폰번호를 반드시 적어 넣습니다.</p> <p>② 지원대상 고객정보 - 지원대상자 : 복지지원 대상자, 다자녀가구의 세대주를 적어 넣습니다.</p> <p><b>「복지지원 대상」</b></p> <table border="1" data-bbox="1016 389 1908 611"> <tr> <td>장애인</td> <td>장애인복지법에 따른 <b>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b></td> </tr> <tr> <td>국가유공자</td> <td>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1~3급 상이자</td> </tr> <tr> <td>5.18민주유공자</td> <td>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1~3급 상이자</td> </tr> <tr> <td>독립유공자</td> <td>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또는 권리를 이전받은 유족 1명</td> </tr> <tr> <td>기초생활수급자</td> <td>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정한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해당자)</td> </tr> <tr> <td>차상위계층</td> <td>- 자활사업참여자, 차상위장애수당자, 한부모가족지원 가정, <b>차상위계층확인자</b>로서 주민센터증명서류 발급 대상자 - 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서류 발급 대상자</td> </tr> </table> <p><b>「다자녀가구」</b>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가 3명 이상 또는 “손(孫)”이 3명 이상으로 표시된 주거용 주택의 세대주 *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와 동일한 주소지에 등재되어있어야 합니다. ** 3자녀 이상 가구는 세대주명과 지원대상자명을 동일하게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세대주 : 지원대상자가 거주하는 가구의 세대주를 적어야하며, 세대주와의 관계는 지원대상자와 세대주와의 관계를 적어 넣습니다. 주소는 주민등록표상 거주지입니다.</p> <p>- 지원대상 종류 : 지원대상자가 해당하는 사항에 “√”표시 하시되, 국가(5.18)유공자는 상이등급을 적어야하며, 상이 3등급 이상만 신청 가능합니다.</p> <p>- 지원기간은 공급지역내 거주 및 자격 보유기간으로 산정, 지원 자격증명 발급일이 전입일 보다 늦은 경우 증명서발급일을 적어야하며, 다자녀가구의 경우는 셋째자녀 출생 등록일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최대 12개월치 지급)</p> <p>③ <b>입급계좌</b> : 지원금액 지급 시 필요합니다. 지원대상자 또는 세대주 명의의 계좌를 적어 넣습니다. 다만 증권계좌 및 일부계좌는 불가하오니 조회 후 지원가능 계좌를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 계좌정보 오류(해지계좌, 계좌번호 오기, 예금주 상이 등)로 인한 경우 지역난방 에너지복지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b>개인정보·교육식별번호·제3자 제공등·민감정보처리·법정대리인 정보수집 및 이용동의,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b> : 지역난방 에너지복지 지원금 지원대상 자격정보 확인에 필요한 정보수집 및 이용에 활용합니다. * 민감정보 수집 및 처리 동의는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장애인에만 해당합니다.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는 <b>지원대상자의 별도 서류 제출 없이</b> 정부 시스템을 이용하여 지원대상자의 자격 및 거주를 검증함에 동의하는 항목입니다. * 만14세미만의 지역난방 에너지복지 지원대상 아동의 개인정보는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 해당 아동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 아동의 에너지복지 서비스 가입을 위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가입 시 고지한 범위 또는 서비스 이용약관에 명시한 범위를 넘어 아동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 아동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위하여 수집한 법정대리인의 개인정보를 해당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를 확인하는 목적 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p>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b>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b>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1~3급 상이자	5.18민주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1~3급 상이자	독립유공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또는 권리를 이전받은 유족 1명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정한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해당자)	차상위계층	- 자활사업참여자, 차상위장애수당자, 한부모가족지원 가정, <b>차상위계층확인자</b> 로서 주민센터증명서류 발급 대상자 - 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서류 발급 대상자	<p>○ 타법 개정 반영 및 추가 자격 명시</p> <p>○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항목 안내 추가</p>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3급 장애인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1~3급 상이자																									
5.18민주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1~3급 상이자																									
독립유공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또는 권리를 이전받은 유족 1명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정한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해당자)																									
차상위계층	- 자활사업참여자, 차상위장애수당자, 한부모가족지원 가정으로서 주민센터 증명서류 발급 대상자 - 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서류 발급 대상자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b>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b>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1~3급 상이자																									
5.18민주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1~3급 상이자																									
독립유공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또는 권리를 이전받은 유족 1명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정한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해당자)																									
차상위계층	- 자활사업참여자, 차상위장애수당자, 한부모가족지원 가정, <b>차상위계층확인자</b> 로서 주민센터증명서류 발급 대상자 - 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서류 발급 대상자																									